「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정시(기업투자)
출자사업 FAQ

2021. 1. 19

정책형 뉴딜펀드
운 영 사 무 국

목 차

FAQ

1. 기업투자(블라인드) 펀드 선정 운용사 수는? ····· 1
2. 중복지원은 가능한가? ····· 1
3. 각 지원 분야별 펀드 제안규모의 한도는 있는가? ····· 2
4. 뉴딜성장형에 1,500억원을 제안하는 VC는 지원불가한가? ····· 2
5. 투자제안형의 경우 산업별로 최소 1개 운용사 선정하는가? ··· 2
6. 기업투자 부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가능한가? ··· 3
7. 목표결성금액의 정의는 무엇인가? ····· 3
8. 총 제안규모가 조성목표 초과시 정책출자액 배분방법은? ···· 3
9. 제안서 제출시 원본1부와 USB를 제출할 수는 없는가? ····· 5
10. 투자제안형의 경우 기준수익률 하향제안 시 Catch up 선택이 가능한가? ····· 5
11. LOC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 5
12. LOC 제출은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 5
13.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 6
14. 책임투자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은? ····· 6
15. 기업투자 부문의 출자신청서 작성요령은? ····· 7
16. 투자제안형 펀드 주목적 투자비율 산정 방식은? ····· 9
17. 후순위 재원 한도는? ····· 10
18.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복수 선택한 경우 콜옵션 행사로 인한 재정출자금액 매입의 영향은? ····· 10

19.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 11
20. 운용사 인센티브 달성 못할 시 패널티가 있는가? ····· 12
21.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 지급 방식은? ····· 12
22. 병행펀드 설정 시, 운용사 출자비율은? ····· 13
23. 펀드 결성 전, 투자가 실시된 타펀드와 병행가능한가? ···· 13
24. 한국벤처투자와 공동출자 가능한가? ····· 13
25. 핵심운용인력의 겸직에 대한 제한은? ····· 13
26. 주관기관으로부터 출자제한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 14
27.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루키리그는 없어진 것인가? ····· 14
28.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14

▼ 이하 1/14일 추가 게시

29.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의 판단 시기는? ····· 16
30. 핵심 운용인력의 참여 펀드 개수 제한에 프로젝트 펀드가 포함 되는가? ····· 16
31. 금융계열사간의 CO-GP가 가능한가? ····· 16
32.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상 투자대상의 범위는? ····· 16
33. 비뉴딜기업이 뉴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투자를 받을 경우 주목적투자로 인정받는가? ····· 16
34.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주기는? ····· 16
35.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가? ·· 17
36.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의 가치 반영 방법은? ····· 17
37.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전략 관련 참고할 수 있는 정부자료는? ·· 17
38. 성장금융 주관의 경우, 별책 1부를 소프트카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한가? ····· 17

Q1. 기업투자(블라인드) 펀드 선정 운용사 수는?

□ 제안 펀드 규모별 최소·최대 예상 선정 운용사 수는 아래와 같음

○ **(투자제안형 1,200억원 이하)** 최소 5개, 최대 12개 운용사

○ **(투자제안형 1,200억원 초과)** 최소 2개, 최대 4개 운용사

○ **(뉴딜성장형)** 최소 2개, 최대 6개 운용사

(단위: 억원, %)

펀드 제안규모		정책출자		조성 목표	운용사수 (예상)		자펀드별 최대 출자액*	주관 기관
		출자 총액	비율		최소	최대		
투자 제안형	500~1,200	2,100	35%	6,000	5	12	420	성장
	1,200~	1,750	35%	5,000	2	4	875	산은
뉴딜 성장형	1,500~	2,700	30%	9,000	2	6	1,500	산은

* 정책출자비율을 40%로 제안 시, 상향 가능

Q2. 중복지원은 가능한가?

□ '21년 **정시분야(기업투자, 국민참여, 인프라)별** 중복지원 허용

○ 단, 운용인력·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아래 사항은 중복지원 불가

○ 기업투자 내 투자제안형(블라인드펀드, 프로젝트펀드), 뉴딜성장형

- 프로젝트펀드의 경우, 블라인드펀드의 재원 소진·공동투자 제안 등은 사전협의 요망

Q3. 각 지원 분야별 펀드 제안규모의 한도는 있는가?

□ (성장금융 주관) 제안규모 1,200억원 이하의 투자제안형 펀드는 500억원~1,200억원 범위내(100억원 단위)에서 제안가능

○ 프로젝트 투자제안형 펀드는 100억원 이상으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제안

□ (산업은행 주관) 제안규모 1,200억원 초과의 투자제안형 펀드 및 뉴딜성장형 펀드는 각각 1,200억원 초과(100억원 단위), 1,500억원 이상(500억원 단위)으로 자유롭게 제안 가능

○ 다만, 펀드별 정책출자금액은 Min(펀드별 최대출자액, 제안규모×정책출자비율)로 결정

Q4. 뉴딜성장형에 1,500억원을 제안하는 VC는 지원할 수 없는가?

□ 뉴딜성장형의 경우 펀드의 형태, 규모 등에 따른 투자방식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원분야를 분리한 것으로, 해당 투자기구만 지원 가능

Q5. 투자제안형의 경우 6대 핵심 뉴딜산업 중 각 산업별로 최소 1개의 운용사는 선정하는가?

□ 투자제안형의 경우 주목적투자분야를 6대 핵심 뉴딜산업 중 택일 또는 뉴딜 40개 분야중 18개 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 및 분야별로 1개 이상의 운용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정시사업 선정결과의 분야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보완 또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21년 중 수시 출자사업 진행 예정

Q6. 기업투자 부문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가능한가?

□ 국민참여형만 가능

Q7. 목표결성금액의 정의는 무엇인가?

□ 목표결성금액은 기본적으로 제안규모를 의미

○ 펀드 규모 자율제안에 따른 제안규모의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 후 금액을 의미함

Q8. 지원분야 내 선정된 펀드의 총 제안규모가 조성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는 정책출자액 배분방법은?

□ 선정된 펀드의 총 제안규모가 조성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된 운용사 간 동일 비율로 목표결성금액을 안분

<정책출자금액 조정 방식(예시)>

조성목표가 6,000억원(정책자금 2,100억원), 선정운용사의 제안규모가 총 6,300억원인 경우

(단위 : 억원)

선정운용사	제안규모 (A)	정책요청비율 (B)	정책요청액 (C=A*B)
합계	**6,300**		**2,260**
운용사1	1,000	30%	300
운용사2	500	35%	175
운용사3	700	40%	280
운용사4	1,000	40%	400
운용사5	1,200	35%	420
운용사6	500	25%	125
운용사7	600	40%	240
운용사8	800	40%	320

○ **(Step1)** '목표결성금액 조정비율(A)' 산출

(목표결성금액 조정비율 = 조성목표/선정펀드의 제안규모 = 6,000/6,300 = 95.2%)

조성목표	6,000
선정펀드 제안규모	6,300
목표결성금액 조정비율(A)	**95.2%**

○ **(Step2)** 운용사간 동일비율로 목표결성금액 안분

선정운용사	제안규모		조정 후 목표결성금액	정책 요청비율	정책 출자금액
합계	**6,300**		**6,000**		2,151
운용사1	1,000		**952**	30%	286
운용사2	500		**476**	35%	167
운용사3	700	**95.2%**	**667**	40%	267
운용사4	1,000	⇨	**952**	40%	381
운용사5	1,200		**1,143**	35%	400
운용사6	500		**476**	25%	119
운용사7	600		**571**	40%	228
운용사8	800		**762**	40%	305

* 정책출자금액 51억원 부족 (51억원 = 2,151 - 2,100)

○ **(Step3)** '정책출자금액 조정비율(B)' 산출

(정책출자금액 조정비율 = P.4정책자금/정책출자금액 = 2,100/2,151 = 97.6%)

정책자금	2,100
정책출자금액	2,151
정책출자금액 조정비율(B)	**97.6%**

○ **(Step4)** 운용사간 동일비율로 정책출자금액 안분

선정운용사	목표 결성금액	정책 요청비율	정책 출자금액		조정 후 정책출자 금액	조정 후 정책출자 비율
합계	**6,000**		**2,151**		**2,100**	
운용사1	952	30%	286		**279**	29%
운용사2	476	35%	167		**163**	34%
운용사3	667	40%	267	**97.6%**	**260**	39%
운용사4	952	40%	381	⇨	**372**	39%
운용사5	1,143	35%	400		**390**	34%
운용사6	476	25%	119		**116**	24%
운용사7	571	40%	228		**223**	39%
운용사8	762	40%	305		**297**	39%

Q9. 제안서 제출시 원본1부와 USB를 직접 제출할 수는 없는가?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 제출이 원칙**으로, 접수시한 내 퀵서비스, 우편 등을 통해 도착한 **제출분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통지로 수신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부득이하게 운용사가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처에 사전협의 요망**

Q10. 투자제안형의 경우 기준수익률을 하향제안하여도 Catch-up 선택이 가능한가?

□ **투자제안형의 경우** 제안한 주목적투자분야의 투자난이도, 리스크,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준수익률을 4%까지 하향제안이 가능**하며,

○ 성과보수 산정방식을 '**[기준수익률 + 2%p] 초과 시 총 누적수익의 20%**, Catch-up 40% 이내' 구조로 제안가능

* 기준수익률 최저 4% 설정시 6%p Catch-up 40%

Q11. 출자확약서(LOC)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 제안서 접수일까지 제출해야 함

○ 단, 접수일 이후 제출가능하나 제한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예정임

Q12. 출자확약서(LOC)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의 양식을 사용하되, 출자기관 고유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정책형 뉴딜펀드에 활용가능한 사항인지(기간, 투자대상, 투자조건 등)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Q13.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양식에 전회사 대표이사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 투자관련 경력의 경우, 공고된 서식에 따라서 경력증빙 제출이 필요

○ 대표이사 날인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 등의 날인으로 갈음 가능(심사과정에서 해당 재직기관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투자 외 경력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제출

* 참여운용인력경력사항 제출시 재직일자 등은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Q14. 책임투자(ESG, 스튜어드십코드) 관련한 평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은?

□ 책임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운용사가 책임투자 도입현황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재** 가능(스튜어드십코드 참여현황 등도 포함)

○ 현재 내규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규 및 제도 구축현황, 투자의사결정 체계 등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 등을 기재

○ 도입추진중 또는 향후 도입 계획의 경우, 도입계획, 실현방안, 일정 등을 기재

Q15. 기업투자 부문의 출자신청서 작성요령은?

□ 아래의 출자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붙임1의 출자신청서 양식 예시를 참조

출자신청서 항목	작성요령
금액 단위	'억원' 단위 기재
회사명	㈜ 기재
신청회사2	공동운용의 경우만 작성
제안펀드 명칭	가칭 기재
투자기구	법적기구 기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中 선택 또는 유사한 목적의 국내외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포함)
제안규모 단위	'100억원' 단위로 기재 (예) 500억원, 600억원, 700억원 …
주목적 투자비율(공통)	[ ] 괄호 내용만 수정 가능 * 단, 뉴딜 투자가이드라인상 40개분야는 60% 이상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50% 이상 제안
주목적 투자비율(추가)	[ ] 괄호 내용만 수정 가능(35%/40%/45%/50% 단위로 기재) (의무투자비율: 목표결성금액의 [정책출자비율 + 10%p])
정책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추가)'와 연동하여 기재(25%/30%/35%/40% 단위로 기재)
기준수익률 제안	7% 이상 자율제안, 투자제안형의 경우 투자 난이도, 리스크,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4%까지 하향 제안 가능**
타 출자자 출자확약액	운용사 약정액은 신청회사란에 기재함에 유의
관리보수	공고문 참고하여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보수	공고문 참고하여 구체적 기재 (①, ② 중 택일) ①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② [기준수익률 + 2%p] **초과 시 총 누적수익의 20%, Catch-up 40% 이내**
기타 출자조건 제안	공고문 의무사항 이외 추가사항 기재 (해당 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초과수익 이전 / 후순위 보강 / 콜옵션 중 선택 (미선택 가능)
운용사 인센티브(기본)	수정 불가
운용사 인센티브(선택)	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 투자 / 기술·우수 혁신기업 투자 / 정책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중 선택(미선택 가능)
참여인력	대표펀드매니저는 산업은행 주관인 경우에만 기재

붙임1. 출자신청서 양식 예시

출 자 신 청 서

(단위 : 억원)

<table>
<tr><td>구분</td><td colspan="2">지원분야</td><td colspan="3">투자제안형</td></tr>
<tr><td rowspan="3">신청
회사
1.</td><td colspan="2">회사명</td><td>㈜가나다인베스트먼트</td><td>법인등록번호</td><td>000000-0000000</td></tr>
<tr><td colspan="2">대표자</td><td>홍길동</td><td>설립일</td><td>2015. 1. 1</td></tr>
<tr><td colspan="2">납입자본금</td><td>100</td><td>출자예정액</td><td>10</td></tr>
<tr><td rowspan="3">신청
회사
2.</td><td colspan="2">회사명</td><td>㈜라마바인베스트먼트
(공동운용의 경우 작성)</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대표자</td><td></td><td>설립일</td><td></td></tr>
<tr><td colspan="2">납입자본금</td><td></td><td>출자예정액</td><td></td></tr>
<tr><td rowspan="15">출자
신청</td><td colspan="2">제안펀드 명칭</td><td colspan="3">뉴딜 가나다 벤처투자조합(가칭)</td></tr>
<tr><td colspan="2">투자기구</td><td colspan="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td></tr>
<tr><td colspan="2">목표결성금액</td><td colspan="3">600억원</td></tr>
<tr><td rowspan="2">의무
투자
비율</td><td>주목적
투자비율(공통)</td><td colspan="3">‘뉴딜 투자가이드라인’상 40개 분야에 목표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목표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td></tr>
<tr><td>주목적
투자비율(추가)</td><td colspan="3">[6대 뉴딜 핵심산업]주1)에 목표결성금액의 [45%]주2) 이상 투자</td></tr>
<tr><td colspan="2">정책출자비율</td><td>35%</td><td>타 출자자 출자확약액</td><td>100</td></tr>
<tr><td colspan="2">존속기간(투자기간)</td><td>10년(5년)</td><td>기준수익률 제안</td><td>IRR %</td></tr>
<tr><td colspan="2">관리보수</td><td colspan="3"><table><tr><th>구 분</th><th>≤500</th><th>≤1,000</th><th>≤2,000</th><th>2,000<</th></tr><tr><td>결성일～2년
(약정총액 기준)</td><td rowspan="2">2.3%</td><td rowspan="2">1.7%</td><td rowspan="2">1.2%</td><td rowspan="2">0.4%</td></tr><tr><td>2년～만기
(투자잔액 기준)</td></tr></table></td></tr>
<tr><td colspan="2">성과보수</td><td colspan="3">[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td></tr>
<tr><td colspan="2">기타 출자조건 제안</td><td colspan="3">공고문상 의무사항 이외 추가사항 기재(해당 시)</td></tr>
<tr><td colspan="2">민간출자자 인센티브</td><td colspan="3">초과수익 이전 / 후순위 보강 / 콜옵션 中 선택(미선택 가능)</td></tr>
<tr><td colspan="2">운용사 인센티브(기본)</td><td colspan="3">뉴딜 분야 의무투자비율 초과 달성 실적</td></tr>
<tr><td colspan="2">운용사 인센티브(선택)</td><td colspan="3">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 투자 / 기술·우수 혁신기업 투자 /
정책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중 선택(미선택 가능)</td></tr>
<tr><td colspan="2">납입방식 제안</td><td colspan="3">수시납</td></tr>
<tr><td colspan="2">참여인력</td><td colspan="3">대표펀드매니저1명, 핵심운용인력2명, 일반운용인력2명, 관리인력2명</td></tr>
<tr><td colspan="2">제안펀드 담당자</td><td colspan="3">투자전략팀 차장 홍길동 (02-1234-1234, hid@ganada.co,kr)</td></tr>
</table>

주1) “6대 뉴딜 핵심산업” 또는 “뉴딜투자가이드라인 18개 분야” 중 선택 (세부 선택분야는 제안서상 기재)
주2) 의무투자비율 : 목표결성금액의 (정책출자비율 + 10%p)

Q16. 투자제안형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 산정 방식 및 예시

☞ **투자제안형(블라인드)펀드는 3가지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아래의 3가지 주목적에 목표결성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투자

주목적	투자제안형
(1) 뉴딜분야 60% 이상 투자(공통)	O
(2) 국내 중소 ·중견기업 50% 이상 투자(공통)	O
(3) 아래 ①, ② 중 택일 하여 35~50%이상* 투자(추가)	O
① 6대 핵심산업 중 택일	
② 뉴딜분야 중 18 개 이내 분야 선택	

* 운용사가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주목적투자 분야로 선택하며, [**정책출자비율 + 10%p**] 이상 투자

<정책출자비율 및 주목적투자비율(예시)>

구분	① 6대 핵심 뉴딜산업 선택 시			② 18개 분야 자율 선택 시		
정책출자비율	30%	35%	40%	25%	30%	35%
		▼			▼	
주목적 투자비율	40%	45%	50%	35%	40%	45%

□ 주목적 투자금액 산정방법 및 예시

제안펀드가 6대 핵심산업 중 D.N.A.를 주목적분야로 선택하고, (가), (나), (다)기업 투자 시

(가)기업 : D.N.A 분야를 영위하는 뉴딜분야 국내 중소기업

(나)기업 : 非뉴딜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다)기업 : D.N.A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 중견기업

(단위 : 억원)

주목적	주목적별 투자기업 해당 여부			투자인정 금액
	(가)기업 100억원 투자	(나)기업 200억원 투자	(다)기업 300억원투자	
(1) 뉴딜 40개 분야에 목표결성금액의 **60%**이상 투자	100	-	-	100
(2) 국내 중소 · 중견기업에 목표결성금액의 **50%**이상 투자	100	200	300	600
(3) 주목적 투자분야에 **정책출자비율*+10%p**이상 투자	100	-	300	400

Q17. 후순위 재원 한도는?

□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민간출자자 출자액의 10% 이내에서 정부 재정 중 후순위 부담금액을 한도로 우선 손실 분담

○ 다만, 자율제안을 통해 조정된 목표결성금액에 상기 비율이 적용되므로 최종 펀드별 후순위 부담 금액은 변동 가능

지원 분야		조성 목표	정책출자자		후순위 부담 한도	펀드별 제안규모	주관
			출자총액	비율*			
블라인드	❶ 투자제안형	6,000	2,100	35.0%	390	500~1,200	성장
		5,000	1,750	35.0%	325	1,200 초과	산은
	❷ 뉴딜성장형	9,000	2,700	30.0%	630	1,500 이상	산은
프로젝트	❸ 투자제안형	2,000	900	45.0%	110	100 이상	성장
합 계		**22,000**	**7,450**				

* 조성목표, 정책출자비율 및 최대출자액은 선정된 운용사의 제안규모, 정책출자비율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펀드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민간출자자에 배분될 초과수익의 10%를 후순위 출자자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이전 한도 : 후순위 보강금액

Q18.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중 ①③또는 ②③을 복수 선택한 경우, ③콜옵션 행사로 인한 재정출자금액 매입의 영향은? (① 초과수익 이전, ② 후순위 보강, ③ 콜옵션)

□ 민간출자자 참여유도를 위해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는 ①③ 또는 ②③을 복수선택 가능(단수선택 또는 미선택도 가능)

○ 다만, **③콜옵션 행사시** 행사자는 ①초과수익 이전 또는 ②후순위 보강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재정출자지분을 매수**하게 되므로, **해당 매수지분만큼 초과수익이전 또는 후순위 보강 인센티브에서 제외**

※ **예시1**(1,000억원 펀드, ①③복수선택시)
- 출자자: 100억원 재정(초과수익 이전), 200억원 산은, 700억원 민간출자
- 70억원을 출자한 민간출자자 A(민간출자자중 지분 10%)가 재정출자지분중 10억원(100억원의 10%)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 ① 초과수익 이전시 재정출자지분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는 제외 (재정외 정책출자자(산은) 지분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는 제공)

※ **예시2**(1,000억원 펀드, ②③복수선택시)
- 출자자: 100억원 재정(후순위), 200억원 산은, 700억원 민간출자
- 70억원을 출자한 민간출자자 A(민간출자자중 지분 10%)가 재정출자지분중 10억원(100억원의 10%)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 ② 후순위 보강 인센티브 제외

Q19.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 기본 및 선택 인센티브(①, ②, ③ 중 택일) 충족 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 일부를 부여받음

○ **(기본 인센티브)**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실적
- 뉴딜분야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초과실적 기준*

* (뉴딜분야투자금액 합계/목표결성금액) - 의무투자비율

○ **(선택 인센티브)**
- 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보통주 투자실적

* 투자비율 = 보통주투자금액 합계/총 투자금액

- ② 기술우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실적

* 투자비율 = TCB(TI) 4등급 이상 또는 혁신기업 1000에 대한 투자실적 합계/총 투자금액

- ③ 정책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 초기투자**이후 후속투자*** 비율 = 후속투자금액 합계/총 투자금액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투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단, 직전 3년 내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초과한 적이 없을 것)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펀드(한국산업은행, 성장금융, 모태펀드 출자펀드)의 신주 투자

*** 정책펀드 투자 후 4년 이내 신주로 후속투자(동일 펀드 내 후속투자 인정)

<기본, 선택인센티브 지급(예시)>

기본 인센티브		선택 인센티브			
초과달성비율	지급비율	투자비율	①신주·보통주	②기술우수·혁신	③정책투자 기업 후속투자
10%p	2%	**10%**	-	-	-
15%p	3%	**15%**	-	-	-
17.5%p	4%	**17.5%**	-	-	-
20%p	5%	**20%**	2%	2%	2%
25%p	5%	**25%**	2.5%	2.5%	2.5%
30%p	5%	**30%**	3%	3%	3%
35%p	5%	**35%**	4%	4%	4%
40%p	5%	**40%**	5%	5%	5%
50%p	5%	**50%**	5%	5%	5%

Q20. 운용사 인센티브 달성을 못할 경우 별도의 패널티가 있는가?

□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뿐, 별도의 패널티는 없음

Q21.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 지급 방식은?

☞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관리보수율 적용 방식(예시)>

결성규모가 800억원일 경우 500억원은 2.3% 이내, 300억원은 1.8% 이내의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구 분	≤500	≤1,000	≤2,000	2,000<
결성일 ~ 2년(약정총액 기준)	2.3% 이내	1.8% 이내	1.2% 이내	0.5% 이내
2년 ~ 만기(투자잔액 기준)				

예시① 결성규모 800억원	500억원	300억원	-	-
예시② 결성규모 2,100억원	5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100억원

Q22. 병행펀드 설정 시, 운용사 출자비율은?

□ 병행펀드와 본 건 제안펀드를 합산하여 약정총액의 1%*

○ 세부 운용조건**은 병행펀드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이어야 함

○ 병행펀드의 결성일은 제안펀드의 결성일보다 늦을 수 없음

* 운용사 출자비율은 약정총액의 1% 이상

** 다만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를 희망하는 경우, 세부 운용조건, 결성일 등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Q23. 제안펀드 결성 전, 투자가 실시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가?

□ 불가함

○ 병행펀드는 동일대상에 동일비율로 투자를 실시해야 함

Q24. 한국벤처투자와 공동출자 가능한가?

□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불가함

○ 단, 지원은 가능하되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펀드를 운용해야 함

Q25. 핵심운용인력의 겸직에 대한 제한은?

□ 금액적 제한은 없으나,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이 투자기간 중 본 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Q26. 당사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출자제한 1년을 받은 상황인데, 금번 지원과 관련하여 1년의 산정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 **주관기관의 제재사항**(공고문 6.제재 사항 및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운용사 판단기준은 **접수일**(2021.1.26.(화)) **기준**

Q27.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루키리그는 없어진 것인가?

□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정시 출자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수요 등을 감안해 검토예정**

Q28.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구분	내용	
1차 서류심사	· 제안사 역량 및 안정성	
	· 운용인력 역량	
	· 펀드 결성 가능성	
	· 투자전략	
	· 펀드관리 능력(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포함)	
	· 보수체계 및 제안사항	
	· 시너지창출가능성	
	우대 항목	· 운용사(계열회사 제외)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안
		· 주관기관의 위탁 운용 펀드 청산수익률이 우수한 경우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방안」 관련 투자 촉진 및 조기결성 인센티브 달성
2차 구술심사	· 제안사 역량 및 안정성	
	· 운용인력	
	· 운용전략	
	· 출자목적 부합도	
	· 펀드운용·관리방안	

* 주관기관에 따라 유사범위 내에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이하 1/14일 추가 게시

Q29.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의 판단 시기는?

□ 투자시점 기준으로 판단

Q30. 핵심 운용인력의 참여 펀드 개수 제한에 프로젝트 펀드가 포함 되는가?

□ 포함되지 않음

Q31. 금융계열사간의 CO-GP가 가능한가?

□ 가능함

Q32.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상 투자대상의 범위는?

□ 뉴딜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위해 전·후방산업* 투자도 인정

* **(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 (도·소매, 단순 운송 등 제외)

(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범용성 부품 제외)

Q33. 비뉴딜기업이 뉴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투자를 받을 경우 주목적투자로 인정받는가?

□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 아닌,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

Q34.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주기는?

□ 대상 : 뉴딜펀드 자펀드 전체

□ 주기 : 반기별 평가

Q35.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가?

□ 아래 원칙에 따라 기재금액을 결정

① '20년말 기준 감사보고서(또는 가결산보고서) 장부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

② '20년말 기준 감사보고서(또는 가결산보고서) 미비시 '19년말 기준 감사보고서 장부가액으로 기재('20년중 취득자산은 취득원가)

* 다만 성장금융 주관의 경우, '20년말 기준 공정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값으로 기재 가능

Q36.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의 가치 반영 방법은?

□ 각 펀드 감사보고서 내 사용하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치 반영

비상장기업 (가)기업을 3개의 펀드(A펀드, B펀드, C펀드)에서 투자 후 A, B펀드는 원가법으로, C펀드는 공정가치 평가값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경우

- A펀드 : 취득원가 10억원, B펀드 : 취득원가 13억원, C펀드 공정가치 15억원

⇒ A펀드 10억원, B 13억원, C펀드 15억원으로 기재

Q37.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전략 관련 참고할 수 있는 정부자료는?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20.12.23 관계부처 합동)(붙임4) 참고

Q38. 성장금융 주관의 경우, 별책 1부를 소프트카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한가?

□ 가능함(사전협의 필요)

▼ 이하 1/19일 추가 게시

Q39. 해외투자 가능 여부는?

□ 비주목적 투자로 목표결성금액의 25% 이내에서 제한적 허용 예정

* 허용비율, 투자분야 등 세부사항은 정관·규약 협의 과정에서 확정

※ 해외투자 예시

가. 국내기업이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외국기업
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외국에 공동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
다. 회사(펀드)가 국내기업(SI)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
라. 국내기업이 외국 투자자 유치 또는 사업의 외국진출을 위해 해외로 법인을 전환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단, 국내에 사업장과 인력 유지, 내국인이 경영권을 보유)
마. 전체 고용인력 대비 한국 내국인 고용률이 50% 이상인 외국기업
바. 국내기업과 제품 또는 서비스, 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

<공고문 수정사항>

지난 12.29일 공고문(기업투자) 관련 수정사항이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table>
<tr><th>현 행</th><th>수 정</th></tr>
<tr><td><p4>

○ 성과보수 : ① 또는 ② 택일
①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② [기준수익률 + 2%p] 초과수익의 20%, Catch-up 40% 이내</td><td><p4>

○ 성과보수 : ① 또는 ② 택일
① <좌동>
② [기준수익률 + 2%p] 초과 시 총 누적 이익의 20%, Catch-up 40% 이내</td></tr>
<tr><td><p6>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③ (선택) 정책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Follow-on) 실적

- 초기투자* 이후 후속투자**실적 (후속투자금액 합계/총 투자금액)

<table>
<tr><th>후속투자 비율</th><th>20% 이상</th><th>40% 이상</th><th>50% 이상</th></tr>
<tr><td>인센티브 지급 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
</table></td><td>③ <좌 동>

<table>
<tr><th>후속투자 비율</th><th>20% 이상</th><th>30% 이상</th><th>40% 이상</th></tr>
<tr><td>인센티브 지급 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
</table></td></tr>
</table>